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3. 11. 29(수) 10:00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57호
- 나. 제 출 자 : 고영찬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천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5조 ~ 제10조)
- 마.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안 제11조)
- 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화학 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안 제12조 ~ 제14조)
- 사. 담당공무원 교육·훈련, 재정 지원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2, 제12조, 제23조, 제23조의4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3. 11. 16. ~ 2023. 11. 22.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위임 사항에 따라 금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에 대비하여 금천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금천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수립으로 타당하다 봄
- 4)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5조 ~ 제10조)
- 5)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안 제11조)
 - 금천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화학안전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6)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화학 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안 제12조 ~ 제14조)
 - 화학사고 발생신고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주민안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
 7) 담당공무원 교육·훈련, 재정 지원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검토의견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안전 이행실태 점검 결과

□ 감독 개요

- (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등 220개소(연간 100톤이상 59개소, 100톤미만 161개소)
- (기간) ' 23.7.10.~8.31. (8주간)

□ 감독 결과

- (전체) 감독실시 사업장 220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97개소(44.1%), 위반건수는 269건(MSDS 위반 223건,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 46건)
 - 사법처리* 2개소(4건), 과태료 89개소(254건, 185백만원), 시정명령 13개소(42건), 시정지시 78개소(185건) 실시
 -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및 설치기준 미흡, 호흡용보호구 미지급,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등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해당

-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실태조사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관리실태가 제도기준에 미흡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금천구 관내에 유사시 화학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의 모범적 정책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봄.
-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위임에 따라 금천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정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정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5. 29.]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4.] [환경부령 제1056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 24., 일부개정]

제7조(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지역환경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설 2021.12.30>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0>

1.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 시장은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⑥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⑦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역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0>

⑧ 제1항에 의한 지역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⑨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